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300호 2023. 3. 30.(목)

【공 고】

○옥천군 공고 제2023-465호 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1
○옥천군 공고 제2023-468호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5
○옥천군 공고 제2023-469호 옥천군 인구증가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7
○옥천군 공고 제2023-472호 도시재생 창의길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44
○옥천군 공고 제2023-473호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46
○옥천군 공고 제2023-474호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56
○옥천군 공고 제2023-477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0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공고 제2023 - 465호

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가. 행정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20.(21일간, 공휴일포함)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3. 30. ~ 2023. 4. 20.(21일간, 공휴일포함)

다. 공고방법: 옥천군청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교평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452번지 일원	침수위험지구	가	33,060	- 저지대 주거지역내 우수관로 노후화 등으로 인한 통수능역 부족 및 보청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발생	

4.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교평	2025년 이후	17,000	-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Q=270㎥/분) - 유수지 설치 1개소(V=6,500㎥) - 우수관로 개량, L=1,390m 등	

※ 사업 시기는 현장여건 및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청 안전건설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43-731-3244)

다. 제 출 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라. 문 의 처: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자연재난팀 담당자(☎043-730-3522)

마. 처리방향: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음.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昇高)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정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11.3.>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table>
<tr><td colspan="6">주 민 의 견 제 출 서</td></tr>
<tr><td>공 고 명</td><td colspan="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td></tr>
<tr><td rowspan="2">의견 제출자</td><td>성 명
(개인/단체)</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지 구 명</td><td colspan="5">교평지구</td></tr>
<tr><td>의 견</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td></tr>
</table>

옥천군 공고 제2023-468호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민원실의 설치 등

○ 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

○ 민원실 연장 운영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4. 의견제출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2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여권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각종 재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본청 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

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4.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5.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제8조(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원 사전예약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팩스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민원 사전예약제 접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 사전예약제 팩스 민원 신청서

□ 민원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민원신청 유형

방문일자	방문 예정시간	여권 (접수. 교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일반, 매도용(부동산,자동차)】	비고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 사전예약제 팩스 민원을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당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1년

○ 고유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 사전예약제 전화 및 팩스민원 관리대장

① 연번	② 접수 일시	③ 성명	④ 생년월일	민원신청유형 ⑤		⑥ 방문 예정 시간	⑦ 서명 또는 날인
				여권 (접수·교부)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일반, 매도용(부동산,자동차)】		

※ 담당 공무원의 경우 ①~⑥항 작성, 민원인의 경우 확인 후 ⑦항 작성

관련 법령 발췌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3-46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및 관련 서식 정비

- 옥천군 출산축하금을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함에 따라 필요사항 정비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설
- 인구정책사업 지원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신청서식 및 관련 관리대장 정비

3. 주요골자

가. 조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행규칙 제명 변경

(현행)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다. 인구정책사업 신청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마. 지원 대상자 지원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opeuhappy717@korea.kr

※ TEL: (043)730-3783, FAX: (043)733-9057

○ 조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정책사업 신청기한 등) 인구정책사업별 신청기한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육아수당, 출산용품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2. 전입축하금, 학생 추가장려금,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교통비 지원, 국적 취득 축하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

금

②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3. 결혼정착금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사업별 신청서를 매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달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및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 변경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읍·면장은 지원금 및 지원용품 등을 지원 결정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한으로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2

0일 이내

2.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지원 결정 후 지체 없이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 및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에 따른 사업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군수

2.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읍·면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표]

옥천군 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제2조 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기한	신청서식
출산 장려 지원	① 출산육아수당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별지 제1호
	② 출산용품 지원	출생아 당 10만원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산후조리 비용 지원	출생아 당 100만원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준하고, '서비스가격' 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본인부담금 청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별지 제2호
	⑤ 임신 전·산후 영영제 지원	[임신 전 영양제] 엽산제 1회 2개월분 (최대 2회/년)	임신 준비 기간	별지 제3호
		[산후 영양제 지원]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 단,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4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	
전입 장려 지원	⑥ 전입축하금	[전입축하금] 1인당 20만원 [학생 추가장려금] 매년 10만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별지 제4호
	⑦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 할인		
	⑧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세대당 20리터 봉투 50매		
	⑨ 교통비 지원	세대당 10만원 교통카드		
	⑩ 국적 취득 축하금	50만원 ※ 전입축하금과 중복지원 가능. 1회 한정 지급		
	⑪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1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관내대학 재·휴학중이면서 전입신고 시 50만원 - 2회차: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동일인에 대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		
지역 정착 지원	⑫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분할) - 1회차: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동일인에 한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별지 제5호
	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입학생 1명당 20만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말일까지	별지 제6호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산육아수당, 출산용품지원, 산후조리 비용지원 등)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주민등록)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주민등록)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옥천군 서비스			
	출산육아수당 (2023.1.1.이후 출생자)	[ ]	* 거주기간 확인 후 지급
	출산용품 (향수ok카드로 지급)	[ ]	* 주소지 확인 후 지급
		향수ok카드번호: - - -	성 명: (출산자 또는 출산자의 배우자)
	산후조리비용	[ ]	* 거주기간 확인 후 지급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00읍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4항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아동수당법」 제24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별지 제2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입일자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급		서비스 기 간	일
출산일		휴대폰 번 호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	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10%)
	원	원
	③ 청구금액 총액	₩ (금 원)

입 금 계 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유 의 사 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금액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리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 신청의 경우)

옥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충청북도 옥천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출산일, 전입일자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관 계	동의확인(서명)
대상자(산모) 성명		(인)
배우자 성명		(인)
		(인)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신청서

<table>
<tr><td>신 청
분 야</td><td colspan="6">☐ 임신 전 영양제 지원 ☐ 산후 영양제 지원 (☐ 2개월분 / ☐ 4개월분)
※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
월일</td><td></td><td>출 산
예정일
(출산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d>자택</td><td></td></tr>
<tr><td colspan="7">「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옥천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7">※ 확인서류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산후 영양제 지원 4개월분 신청 시 의사소견서 첨부</td></tr>
</table>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충청북도 옥천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옥천군 거주여부, 출산예정일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table>
<tr><td colspan="9">기 본 현 황</td></tr>
<tr><td>신 청
분 야</td><td colspan="8">□ 전입축하금 □ 학생 추가장려금 □ 문화시설관람료 할인
□ 쓰레기봉투 지원 □ 교통비 지원 □ 국적취득 축하금
□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명</td><td colspan="7"></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자택</td><td colspan="2"></td><td>휴대전화</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9">세 부 신 청 사 항</td></tr>
<tr><td rowspan="11">전입
장려
지원</td><td rowspan="5">전 입
대상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 colspan="2">전입일자</td><td colspan="3">향수OK카드번호</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학생
추가장려금
□1회차□2회차
□3회차</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전입일</td><td>학교명</td><td>학년</td><td colspan="2">향수OK카드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국적 취득
축하금</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국적취득일</td><td colspan="2">국적 취득 전
주소지</td><td colspan="2">향수OK카드번호</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1회차□2회차</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전입일</td><td>학교명
/학과</td><td>학년</td><td colspan="2">향수OK카드번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9">「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9">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8">1. 전입축하금: 향수OK카드 사본
2. 학생 추가장려금 지원 대상자: 재학증명서, 향수OK카드 사본
3.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대상자: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재학(휴학)증명서, 향수OK카드 사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함</td></tr>
</table>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충청북도 옥천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전입장려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타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및 옥천군 거주기간, 혼인일, 국적취득일, 학교명, 학과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청구분	□ 1회차		□ 2회차	
	성 명		남편 / 아내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혼인신고일	
	계좌번호			은행명	
배우자	성 명		남편 / 아내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혼인신고일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결혼정착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 주민등록초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결혼정착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혼인신고일, 전입일자 및 옥천군 거주기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 청 인
(보호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5">핸드폰)　　자택)</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예 금 주</td><td colspan="2" rowspan="2"></td><td>은 행 명</td><td colspan="2"></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대 상
학 생</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신청인과의
관 계</td><td colspan="5"></td></tr>
<tr><td>학 교 명</td><td></td><td>학년</td><td></td><td>입학일</td><td></td></tr>
</table>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옥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타 지역 거주기간, 전입일자 및 옥천군 거주기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임산부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산부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산모 이름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출산 (예정)일	등급	서비스 기간(일)	본인부담금 발생액(원)	지원금액 (원)	비고

[별지 제9호서식]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항목		출산(예정)일	지급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임신전	산후			

[별지 제10호서식]

전입장려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사항		결정사항			통보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분야	항목	일자	지원 여부	내용		

※ 작성대상사업: 전입축하금, 문화시설관람료할인, 쓰레기봉투 지원, 교통비지원, 국적취득축하금

[별지 제11호서식]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사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	학과(년)	지원액(만원)	회차	

[별지 제12호서식]

결혼정착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혼인 신고일	배우자 (생년월일)	지원 차수	지급일	지급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별지 제13호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인 인적사항 및 지원내역		대상학생 인적사항					비고
	신청인 성명	주 소	학생 성명	신청인과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입학 학교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3-47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창의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재생 창의길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옥천군수(도시교통과장)
다. 사 업 구 간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4-17번지 일원
(충북도립대 정문 ~ 김밥천국 사거리)
라. 사 업 량 : L=265m(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4-17번지 일원
나. 지장물건 : 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3년 5월 중 개별통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평가기관 :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도지사,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3. 30. ~ 2023. 4. 13.(15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043-730-3563)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토지소재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각자 추천할 수 있으며, 이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043-730-3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공고 제2023-473호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안 제3조부터 안 제4조)

○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및 녹색교통활성화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 탄소흡수원확충 및 온실가스 정보통계 작성(안 제15조부터 안제16조)

○ 지역물관리사업(안 제17조)

○ 녹색생활운동지원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3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dlskfo89@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포함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또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기후과학, 에너지·자원 등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탄소흡수원 확충 등)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기업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6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관리·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재정지원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3-474호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시행규칙명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옥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폐지

4.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29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dlskfo89@korea.kr
전화: (043)730-3433, FAX: (043)731-291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옥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3-477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명칭 및 위치, 관리책임 및 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조례 적용 시설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별표 1)

○ 휴관일 등 규정 통합 및 공고규정 신설, 입장의 제한 신설(안 제5조, 제6조)

○ 시설사용료와 요금표의 게시등 관련 조항 통합(안 제8조)

○ 상품권 본인 수령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관련 조항 정비(안 제10조)

○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및 당일 현장 예약, 사전예약 규정 수정, 별도 예약제 규정 추가(안 제12조)

○ 다자녀할인 등 자녀의 나이 변경 및 연나이 적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

○ 예약 가능 건수 및 숙박기간 제한(안 제12조)

- 회원 당 1일 1건의 시설물(숙박시설 및 야영장), 숙박기간 3박 4일까지 가능

○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자 예약 사항 신설(안 제13조, 제14조)

○ 예약사항에 대한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5조)

○ 이용객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제17조)

○ 주차료 면제 대상자 구체화(별표 2)

-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이용자, 회의 및 강의시설 이용자 추가

○ 옥천군민 이용 확대를 위한 감면기준 확대

- 옥천군민 비수기 감면율 상향 조정(30% → 50%)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90, FAX : (043)731-9011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장령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일원으로 한다.

제3조(관리책임 및 의무) ①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회의 및 강의시설

3. 체험시설

4. 야영시설

5. 기타시설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추석의 연휴. 다만,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전염병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군 관내 재난 등으로 인한 소방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숯불, 장작, 번개탄 등(휴대용 가스버너 제외)을 이용하여 불을 피우는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숲속수련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④ 야영장(정자·데크 등)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야영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한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9시 전까지

3. 야영 이외 기간(11월~3월) :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⑤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전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추가로 정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할때에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⑤ 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하며,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2.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⑥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 및 신용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환원)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옥천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은 예약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예약자 본인이 해당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적발된 때로부터 1년간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교육·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주차료 면제대상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3. 국가 재해·재난 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시설물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소동), 숲속수련장으로 한정하며, 입실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또는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에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한 시설사용료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천원단위까지 지급 가능 금액으로 절상하여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은 예약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⑥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⑦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적발된 때로부터 1년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약금 및 환급·배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소비자기본법」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사전 예약취소 없이 사용일 당일 입실하지 않은 경우 사용
3.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4.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입실·입장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주차료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군 지역에 기상경보가 발령되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부를 환급한다. 다만,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3. 군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요금을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별표 3에 따라 배상한다.

1.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사용기간 만료 전 퇴실하는 경우

제12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나 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플랫폼 등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다음 각 호의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사용예정일 7일 이전 예약 : 다음날 23시 50분까지

2.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예약 :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

③ 제2항의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 신청은 취소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일 예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⑤ 예약 가능 건수는 회원당 1일 기준으로 시설물(숙박 및 야영시설) 1건으로 제한하며, 숙박 기간은 3박 4일 이내만 가능하다.

⑥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숙박 및 야영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하며, 보호자 동반 없이 숙박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옥천군민(주민등록표상 옥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

를 위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은 숙박시설 중에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숙소동)에 한정하며, 객실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사전예약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였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⑨ 군수는 부대시설 및 강의실 등 시설물의 특성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별도의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사업, 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플랫폼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숙소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숙소를 포함하여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소 사용 인원은 7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연 2회)

제15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

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7항에 따른 사전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6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행성 오락 및 무분별한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2. 취사·취식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3.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않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파손 또는 수목의 손상,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세입세출)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옥천군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옥천군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위탁기간은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사용료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의 전일(前日)은 제외한다.

라.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마.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만 나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구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녀는 제외한다.

사. “시설사용료”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조성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란 국립·공립·사립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 및 결제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자.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차. “관리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고, 이용객이 산림휴양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2-1. 숙박시설 및 상품권 환원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				비 고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일반	옥천군민	일반	옥천군민	
숲 속 의 집	4인실	24.1㎡	1실 /1일	55,000	28,000	70,000	49,000	
	6인실	43.0㎡		60,000	30,000	85,000	60,000	
	8인실	50㎡		85,000	43,000	110,000	77,000	
	15인실	110.0㎡		145,000	73,000	190,000	133,000	
	20인실	100.0㎡		200,000	100,000	245,000	172,000	
	25인실	132.0㎡		250,000	125,000	300,000	210,000	
	(30인실	192.48㎡		300,000	150,000	400,000	280,000	
산 림 문 화 휴 양 관	4인실	23.4㎡	1실 /1일	50,000	25,000	70,000	49,000	
	6인실	35.1㎡		70,000	35,000	100,000	70,000	
	8인실	47.5㎡		90,000	45,000	140,000	98,000	
	6인특실	46.8㎡		100,000	50,000	160,000	112,000	
	4인특실	52.6㎡		150,000	75,000	180,000	126,000	
숲속수련장	298.48㎡		1동 /1일	360,000	180,000	480,000	336,000	숙박,식당,세미나실

	구 분	기준	환원금액	비고
상품권 환원	사용료 100천원 이하	1실	5,000원 상품권 지급	※ 숙박시설 사용에 따른 상품권 지급 ※ 시설 예약자 본인 지급
	사용료 100천원 초과		5,000원 상품권 추가 지급 (사용료100천원 증가될 때마다 5,000원 추가)	

2-2.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		비 고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대회의실	359.55㎡	4시간	200,000	300,000	※기준초과 1시간당 30천원 추가 징수
1,2다목적실	67.6㎡	4시간	150,000	200,000	※기준초과 1시간당 20천원 추가 징수
1강의실	53.25㎡	4시간	150,000	200,000	
2강의실	39.5㎡	4시간	100,000	150,000	※기준초과 1시간당 15천원 추가 징수

2-3. 체험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				비 고
			대인		소인		
			일반	옥천군민	일반	옥천군민	
열치유실	1실	50분	5,000	3,000	3,000	1,000	※ 대인: 13세 이상 소인: 12세 이하 ※ 영유아 무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물치유실	1실	50분	5,000	3,000	3,000	1,000	

2-4. 야영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		비고
			야영 이외 기간	야 영 기 간	
정자·데크	1개	1일	10,000	20,000	※ 야영기간 - 4. 1. ~ 10. 31.
파라솔	1개	1일	5,000	10,000	
천 막	1동	1일	5,000		※ 본인지참
텐트(타프포함)	1개	1일	4,000		※ 본인지참

2-5. 기타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사용 기준	금 액		비 고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단 체 식 당	118.44㎡	1일	200,000	200,000	※ 사용시간 - 9:00 ~ 21:00
전 용 테 라 스	360㎡	1시간당	50,000	50,000	※ 사용시간 - 9:00 ~ 21:00
야외음악당	1개소	4시간이내	80,000	120,000	※ 사용시간 - 9:00 ~ 21:00
		4시간이상	100,000	150,000	
주 차 료	경차(1,000cc이하)	1대/1일	1,000		
	소형(15인승이하)		3,000		
	대형		10,000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입증서류

감면대상		감면율	일수	입 증 서 류	비 고
다자녀	옥천군민	50%	연3일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50%	연1일		
국가보훈대상자		30%	연1일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30%	연1일	- 의사자 유족증 - 의상자증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		30%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위임장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0%	연1일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예약자가 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대상 ※ 장애인 본인과 함께 입실시 적용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30%	연1일	- 병역명문가증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옥천 군민	성수기 및 주말	30%	제한 없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여권	
	비수기 및 주중	50%	제한 없음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10%	연3일	- 디지털관광주민증	
주차료 면제		-	제한 없음	- 해당 증명서류	

※ 시설사용료 감면혜택 중복 적용 불가

- 사용료 감면 혜택은 예약 당사자에게 지급, 1가구당 1일 1실만 적용

※ 감면 적용 시 입증서류 제출

※ 주차료 면제 대상자 : 옥천군민,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장애인(등급제한 없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자, 회의 및 강의시설 이용자, 공무수행자

[별표 3]

장령산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 분		위약금 공제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구 분		배상 기준		비 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붙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

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붙임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